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온라인 소통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 밑에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6명(5급 5명, 7급 1명) 중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에서 2024년 8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종전의 직급(9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7. 00.~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령 제 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4. 장·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6. 부내 디지털 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별표 2 중 “운전주사보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령 제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4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대변인) ①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4. 장·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6. 부내 디지털 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신설>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u>및 운영</u> <u>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u> <u>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u> <u>4. 장·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u> <u>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u> <u>6. 부내 디지털 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u>		
여성가족부령 제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2년 6월 23일까지 존속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u>	<u><삭 제></u>	<u>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u>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u>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운전주사보</u>	<u>1</u>	<u><삭 제></u>	-1
운전서기보	<u>2</u>	<u>3</u>	+1
•	•	•	
•	•	•	